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3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민청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대관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대관료 감면) 시장은 서울특별시 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0조(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서울특 별시가 후원하거나 공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 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 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 다)으로 대관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 하여는 대관료의 100분의 30 범위 에 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관료 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면율 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u></p>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시 시민청 대관료를 할인하는 경우, 대관료 수익금(세외수입)이 할인을 만큼 감소함(약 18백만원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시민청 대관료 수익금 현황(3개년)을 근거로 할인을 30% 적용시 연간 약 80,000천원 수익금중 약 18,000천원 감소가 예상됨

<시민청 대관 수익금 현황(2016~2018)>

(단위: 천원)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3개년 평균수익금	감소 수익금 (30%할인시)	비 고
계	84,561	78,437	79,312	80,770	17,957	5.2시행 예정
1분기	22,470	18,596	20,674	20,580	-	
2분기	26,059	21,788	21,633	23,160	6,948	
3분기	17,779	19,836	12,085	16,567	4,970	
4분기	18,253	18,217	24,920	20,463	6,139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시민소통담당관 박 근 호 (02-2133-6416)